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허가 목적)

- ①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호수순환도로 등 사용허가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코끼리열차 운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2차연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하여 부과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의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③ 서울대공원의 결정으로 관람시설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 허가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으로 허가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 및 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연납이 원칙으로서 서울대공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대공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분할납부)

- ①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시행령」 제14조 제10항에 따라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서울대공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제출하되,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서울대공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와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따른 이자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이 사용료를 완납하였을 때는 “사용인”의 반환신청에 따라 서울대공원은 보증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

제6조(코끼리열차 탑승료)

- ① 코끼리열차의 1회 탑승료는 운행개시 전 서울대공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의 탑승료는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운영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대공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탑승료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인”은 원가 상승 요인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탑승료 조정 여부 및 조정 수준은 공공성, 이용객 부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대공원이 결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한 과납금을 월할 계산(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사용인”에게 반환하되, “사용인”의 귀책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대공원이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대공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보험 가입)

“사용인”은 고객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시험운행 개시 전까지 서울대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이행)

- ① “사용인”은 입찰공고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대공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② “사용인”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해야할 경우 사전에 서울대공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사업계획서상의 열차 제작 및 설비투자 공정계획에 따라 공정단계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일정의 과도한 지연 시 서울대공원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사고의 예방)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위치에 있음에 따라 운영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여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서울대공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서울대공원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이행조치 등 준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인”은 협조해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보건 등과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 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 계획 수립
- ▶ 중대재해처벌법(제7조, 제9조)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의무 준수
- ▶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예산 편성, 위험요인 파악 및 유지보수
- ▶ 안전보건 교육 및 유해요인 점검·조치 절차 및 중대재해 대응절차 마련 등

- ④ 사용허가시설에 대한 공사 및 유지·보수 시 이용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설비투자)

- ① 현 시설 상태에서 사용허가하며, “사용인”이 자체 정비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 ② 전기(하이브리드 제외)·저상 열차를 최소 9대 보유한다. ※ 성수기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추가 요청할 수 있음
 1. 동력차 1량 + 객차 3량으로 성인 약 100명 정원 조건(약 18톤)에서 견인·제동·재출발 가능
 2. 저상구조(객차 바닥높이 350mm 이하), 휠체어 공간 및 휠체어 승하차 가능한 출입구 폭 등 포함
 3. 전 객차 전자식연동제동장치(EBS), 속도제한장치(20~25km/h) 적용
 4. 배터리는 KC인증 배터리팩, 열폭주 감지센서 및 자동 소화 장치 탑재
 5. (권장사항) 모터 정격 토크 450Nm 이상으로 만차 상황에서 안정적인 Hill Start
 6. (권장사항) 상온 무충전 200km 보증으로 최성수기 이용객 안정적 흡수
- ③ 200kW급 급속충전기 3기 이상을 설치한다.
 1. 전력 인입·증설, 설치 부대공사, 운영시스템 등 포함
- ④ 정비 인프라 및 예비부품을 확보한다.
 1. 전동차량 정비에 필요한 장비 보강과 고전압 대응체계 보완 등
 2. 부품 단종, 납기 지연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부품 확보

- ⑤ 승하차장을 정비하고 동선을 개선한다.
 - 1. 저장구조에 맞춘 환경조성(단차·틈새 관리 등) 및 설비·동선 개선 등
 - 2. 승하차 동선과 보행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구조와 안전장치 배치
 - ※ 코끼리열차 및 매표소 등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 시행
- ⑥ 매표소, 운영사무실, 대기실 등 주요시설은 현재 설치된 시설을 기본으로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다.

※ 사용허가 개시 전, 설비투자 및 테스트 완료

※ 설비투자 조건준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배터리 탑재, 충전설비 추가, 예비차 확대, 운영 효율화 등 대안 제시 가능

제13조(운영)

- ① 고용승계 및 인계를 이행한다.
 - 1. 기술인력 등 현재 코끼리열차 운영업무 전담하는 현장인력 승계 원칙
 - 2. 허가기간 종료 후 차기 사용인에게 협의, 인계
- ② 차량 수에 비례한 적정 수의 교통수단 운전/정비 가능 면허소지자를 확보한다.
- ③ 운영인력은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도입 차량의 운행상황을 감안하여 가감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 1. 계절, 시간대별 탑승인원에 따른 임시인력 탄력 운영 가능
 - 2. 본사 임원급 총괄책임자 등 적정 운영인력 유지
- ④ 고전압 정비인력·장비·공간을 상시 확보한다.
- ⑤ 탑승객 수·매출액·가동률 등 운영 관련 정보를 제출한다.
- ⑥ 사용허가 개시와 동시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3개월의 시험 운행 기간을 확보한다.
 - 1. 반복운행 과정에서 충전 운영, 주행 안정성, 승하차 동선, 정비 대응, 부품 수급 등 실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 보완·개선
- ⑦ 사업자 변경 시, 매뉴얼, 정비이력, 부품 목록과 교체 주기, 소프트웨어·펌웨어 버전, 진단 로그 등 운영 연속성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한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 ① “사용인”은 코끼리열차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서울대공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조건 없이 서울대공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의한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며, 서울대공원에 소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③ 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서울대공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물은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및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대공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①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 ②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③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④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서울대공원은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을 국가나 서울특별시나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3.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4. 허가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때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까지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7. 서울대공원의 승인 없이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8. “사용인”의 민·형사상 문제로 허가재산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9. 제10조 제3항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제19조(청문)

서울대공원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손실보상)

제18조 제1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인”에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한다.

제2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배상)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대공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서면으로 서울대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운행중단에 따른 비용부담)

“사용인”은 서울대공원의 승인 없이 코끼리열차 운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을 중단 한 경우 서울대공원에서는 대체 운행 수단을 도입할 수 있으며, 대체 운행 수단 투입에 따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24조(사용재산의 반환 등)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대공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대공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대공원이 인정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서울대공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대공원이 서울대공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책임과 의무)

“사용인”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시설물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지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용인” 임의로 코끼리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전에 서울대공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최소 월 1회 이상 친절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코끼리열차 탑승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사용인”은 탑승객이 잘 볼 수 있게 서울대공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코끼리열차 승차요금 및 승하차 시 유의사항 등을 부착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5. “사용인”은 서울대공원과 디자인 등을 상호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유니폼·명찰을 “사용인”의 부담으로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의 복장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6.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허가재산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매수표소 및 직원 대기실, 사무실 등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한 적정규모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사용허가 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태만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인”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 “사용인”은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공원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10. “사용인”은 운영상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탑승객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탑승객에게 보상하거나 치료해 주어야 한다.

제27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서울대공원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배상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서울대공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광고물 설치금지)

“사용인”은 서울대공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광고물 및 특정 회사 선전물을 부착하지 못한다.

제30조(행정처분)

서울대공원은 “사용인”이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비고
1회	주 의	※ 1년 기간 동안 위반 횟수에 대한 조치 기준임 ※ 허가취소 시 차후 입찰 참가제한(부정당업체 등록)
2회	경 고	
3회	허가취소	

제31조(서울대공원 내 행사·공사 등에 대한 협조)

- ① 서울대공원이 주최하거나 허가한 행사 중 허가재산을 사용하는 행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종합안내소 등 사용허가 시설의 공사 또는 변경 시 사무실 및 매표소, 탑승장 등 사용 공간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적정 장소로 이전 설치·운영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허가재산을 공원관리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운행 이외의 용도(예: 러닝트랙 등)로 일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영업시간 준수)

코끼리열차 운행은 서울동물원 및 서울랜드 개·폐장 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그에 따른다.

제34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 승인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허가 만료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허가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 붙임 1. 공원시설 사용 위치 도면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 재산 목록 1부.
3. 코끼리열차 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 및 조건 1부. 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대상 재산 목록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막계동 산118-3 일원)
- 허가시설
 - 토 지 : 11,878.8㎡(호수순환도로 11,000㎡, 부대시설 878.8㎡)
 - 건 축 물 : 317㎡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구 조
			토 지	건 물	
합계			11,878.8	317	
무궤도열차 도로		호수순환도로	11,000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1 승차장		종합안내소 2층	481	231	철골조
제2 승차장		서울동물원 입구	100		천막/철주
제3 승차장		서울랜드 정문앞	116.5		천막/철주
제1 매표소		종합안내소 1층	45.0		경량철골
제2 매표소		서울동물원 입구	20.5		경량철골
제3 매표소		서울랜드 정문앞	12.5		F.R.P
차량 정비 시설	부 지	서울랜드 주차장	103.3		-
	도 크	서울랜드 주차장	2.1m×5.1m×1.1m		철근콘크리트
	천 막	서울랜드 주차장	8.4m×12.3m×5.0m		천막/철주
사 무 실		종합안내소 1층	-	86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 시설장비 현황

코끼리열차(현재 운영사업자 소유 , 1대당 정원 96명)						매 표		정비 센터	전기차 충전소
소계		전기 열차		디젤 열차					
동력차	객 차	동력차	객차	동력차	객차	매 표소	창구수		
9	27	3	9	6	18	3	13	1	2

코끼리열차 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시설 기준 및 세부 조건

구 분	주 요 시 설 기 준 및 조 건
운행 수단 (코끼리열차)	◆ 사용허가 조건 제12조에 따르는 친환경·저상 코끼리열차를 운행하여야 함 ◆ 탑승객 및 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속 20km 이내 속도로 주행하여야 함 ◆ 운행수단의 외관은 서울대공원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상징성이 있도록 장식되어야 하며, 제작 전에 서울대공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추위, 더위, 눈·비오는 날을 대비하여 방수 및 보온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가능한 한 유모차 등을 이용하여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한국테마파크협회의 안전검사를 필하여야 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제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운행 도로 (호수순환도로)	◆ 운행수단이 운행되는 도로는 서울대공원 호수순환도로 거리는 약 2.2km이며 점용면적은 약 11,000㎡임. ◆ 호수순환도로에는 공원 이용 시민이 이용하는 보도와 구분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 안전시설물은 기능 및 디자인 등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인수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은 일체 정비하여야 함) ◆ 적정 장소에 도보로 이동하는 공원 이용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건널목을 설치하여야 함 ◆ 호수순환도로 주변 전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코끼리 열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역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구 분	주 요 시 설 기 준 및 조 건
승 차 장	◆ 승차장 위치는 총 3개소(종합안내소, 동물원 정문, 서울랜드 정문)임 - 향후 필요할 경우 증가할 수 있음 ◆ 승차장은 탑승객 탑승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공원 시설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어야 함.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탑승객 규모에 따른 적정 안내·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매 표 소	◆ 매표소 위치 : 3개소 - 종합안내소 : 창구 3개, 동물원 정문 : 창구 2개, 서울랜드 : 창구 2개 - 향후 필요할 경우 증가할 수 있음 ◆ 매표소는 탑승객이 매표가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함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서울대공원을 찾는 시민 편의를 위하여 동물원+리프트+코끼리 열차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발매 등 마케팅을 할 수 있음
사무실 등	◆ 사무실 : 종합안내소 등에 1개소 설치 ◆ 직원대기실 : 종합안내소 승강장 뒤 1개소 설치 ◆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 유지하여야 함
운영 인력	◆ 차량 수에 비례한 운전면허 · 정비면허 소지자 확보 ◆ 계절, 시간대별 탑승 인원에 따른 안전 요원 배치 등 ◆ 본사 임원급 총괄책임자 등 적정 운영인력 유지

서 울 대 공 원